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
----------	----

제출년월일 : 1999.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불분명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
(안제23조의3, 제39조의4 신설)

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세분화(안제22조)

다. 대부료의 납기를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수입금 확정후 6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안제26조)

라. 수의매각 범위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농지 10,000㎡이하를 5년이상 실경작한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6,600㎡이하 폐천부지를 5년이상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할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제39조의2)

마. 관사의 종류중 실과소장 관사를 삭제하고 시설관리사 의사숙소를 추가로 규정(안제5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도 춘척(세회 11150-133, '99. 1. 19) - 별첨

라. 입법예고기간('99. 2. 26-3.15)중 특이사항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바. 기타 : 공유지임대 및 매각대금 감면내용,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건-별첨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③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 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재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제6항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중 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사업 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사. 제19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 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균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내로 한다.

③경작적목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 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 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 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 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 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실·과장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1급 내지 2급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 의사숙소 및 기타관사 등"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공유지 임대 및 매각대금 감면내용

<임대>

감면 범위	전액 감면	75% 감면	50% 감면
① 조세감면 대상으로 고도기술 수반사업	①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	—	—
② 외국의 투자사업으로 제조업	②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②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	②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
③ 고용창출 효과가 큰사업	③ 고용인원 3백명 이상	③ 고용인원 2백명 이상 3백명미만	③ 고용인원 1백명 이상 2백명미만
④ 국내 부품, 원·부자 재 조달사업	④ 국내 조달률이 1백%인때	④ 국내 조달률이 75%이상~100%미만	④ 국내 조달률이 50%이상~75%미만
⑤ 수출지향형 투자사 업	⑤ 전체 생산량의 1백%를 수출하는 때	⑤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백%미만 을 수출하는 때	⑤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 을 수출하는 때
⑥ 기존 투자법인으로 타지역에서 이전	①~⑤에 해당하는 경우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②~⑤에 해당하는 경우
⑦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	—

<매각>

전액 감면	50% 감면	25%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 • 투자금액이 30억달러이상 대형공장 및 부대시설지역 • 1일평균 고용인원 1천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대상이고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 벤처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 1일평균 고용인원이 5백명 이상 1천명미만 • 전체 생산량의 1백%를 수출하는 경우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원·부소재 조달률이 7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이 3백명 이상 5백명미만 •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원·부소재 조달률이 50%이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건

분할 납부 조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재산
상환기간	이자율	
10년 이내	년 5%이자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재산매각 2.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매각 3. 주택개량 개발지구안의 사유건물에 점유된 토지를 사용자 에게 매각할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의 매각
10년 이내	년 8%이자	1. 농지를 대부분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때 및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철거주인에게 매각 2. 81.4.30.이전 부터 개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 좁고 긴모양의 폐드 계두거르 개인소유 토지에 1/2이상 접한토지 3.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400㎡ 이하의 토지매각
5년 이내	년 8%이자	1.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을 점유자에게 매각할 때, 관광진흥법에의하여 개발한 재산을 입주자에게 매각할 때,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공공시설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관과 함께 이관하는 재산 2.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의 매각 3. 기타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0년 이내	년 4%이자	1. 전원개발, 다목적댐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의 매각 2. 인구분산 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산매각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해 건립한 주택 부지 매각, 5. 외국인투자기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매각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②(생략) ③<u>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④~⑤(생략)</p> <p>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u>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신설></p>	<p>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②(생략) ③<u>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④~⑤(현행과 같음)</p> <p>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u>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영구 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 잡종 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주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평창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평창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평창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시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⑤(생략)</p> <p>⑥<u>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u></p> <p>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균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p> <p>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p> <p>5.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⑤(현행과 같음)</p> <p>⑥<u>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u></p> <p>⑦<삭제></p> <p>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사업 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p>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토석채취료 등)①~③(생략)</p> <p>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회조서 사정정통 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싯가조사, 기타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 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 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으르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 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 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으르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 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 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사. 제19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공 유재산</p>	<p>제24조(토석채취료 등)①~③(현행과 같음)</p> <p>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 관련단체 및 조합</u>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싯가조사, 기타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p> <p>1. <u>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지면적이 광할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p> <p>2. ~ 3.(생략)</p> <p><신설></p> <p>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군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p> <p>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p> <p>②계약종료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p> <p>1. <u>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text{총 면적}$ </div>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생략) ②~③<삭제>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u>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u>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u>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u>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 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평방미터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평방미터 또는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 부지안에 능경지가 있는 경우 <p>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①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된 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가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 사업내의 재산 <p>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u>실·과장등</u>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p> <p>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u>3급관사 : 1급내지 2급이외의 관사</u> <p>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6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 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u>시설관리사등</u>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p> <p>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3급관사 : 시설관리사, 의사숙소 및 기타 관사 등</u> <p>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제89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 - - 다만 - -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만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장을 축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잡종재산의 대부기간) 제1항제2호

2.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 - -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20년.

제91조(대부료의 납기) 제3항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8%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 - - - "

제92조의2(대부료의 감면)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제2항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농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할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2. 취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 주민에게 매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25.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제96조(잡종재산 가격의 평정) 제10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 - -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제1항 및 제2항

①"- - -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 - - 연 3%내지 8%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7항

법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의 감면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 -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강원도
KANGWON PROVINCE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 / ☎(0361)249-2554 (행정) 2554/ FAX (0361)249-4028 /
세무회계과장 조 광 수 담당자 황 덕 창

문서번호 세회 11150 - 133
시행일자 1999. 1. 19. (년)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선 결	과 장	황덕창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99. 1. 19.	관 령	
	번호	133		관객성명
	처 리 과	세무	이 랑	
	담 당 자			

계 목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통보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통보하니 공
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1부. 끝.

강 원 도 지
전 결 세무회계과장 조 광 수



-수신처 거(-법무담당관실), 도의회사무처, 너, 더, 러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 232-80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전화 (0374)330-2273 / 전송 330-2593
 처리부서: 평창군 재무과 (본관 1층) 과장 신영선 담당 임준환 실무자 이용구

문서번호 재무 13330 - 45

시행일자 1998. 2. 24.

경유 (제 1 안)
 발음 받는곳 참조
 참조

취급	체 승	군 수
보존	년	
부군수		
과 장	전 결	관재담당 임준환
기안	이 용	

제목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협조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따른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대금 감면규정의 신설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와 불일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불임과같이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니.

2. 기획실에서는 입법예고는 및 개정조례안 군보게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99.3.5까지 개시결과(사진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각1부.



평 창 군 수

받는곳: 기획실장, 도(1-8)